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9나2004739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권오천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창용

변론 종결 2019. 3. 22.

판결 선고 2019. 5. 3.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62306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D[E생]이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00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 내지 제4쪽 제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이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였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 제13호증,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내지 제5쪽 제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나 주가가 오르지 않자 2016. 11.경 폭력조직원을 동원하여 "1주당 5,000원에 매수해 가든지, 아니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장내에 처분하든지, 두 가지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라", "주가를 무조건 5,000원까지 끌어 올려라"는 취지로 D를 협박하였다. 당시 피고는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2016. 8. 30.자로 그 공시까지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일시에 처분할 경우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거나, 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부득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주식은 1주당 2,755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그 2배에 가까운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D 및 피고의 공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제110조 제1항)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판단

을 제1, 2,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8. 30.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하기로 결의한 사실, 2016. 11.경 피고의 주가가 2,500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의 직원인 F이 2016. 11.경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D에게 피고의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 4, 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D은 2016.5.경 피고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12. 30.에도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공박 상태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큰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③ 피고또는 D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가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재, 판사 구자현, 판사 최승원